

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 
제232회 임시회 (2019. 7. 24.)

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적기업 육성  
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 검 토 보 고 서



행정건설위원회  
전문위원 조희옥

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적기업 육성  
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 검 토 보 고 서

## 1. 제출경위

- 가. 의안번호: 19-85
- 나. 제 출 자: 마포구청장
- 다. 제출일자: 2019년 7월 15일(월)
- 라. 회부일자: 2019년 7월 16일(화)

## 2. 제출사유

「지방자치법」 제116조의2(자문기관의 설치 등)제2항 “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”는 규정에 따라 동일법령에 근거를 두고 있는 두 개의 조례 중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적 경제 기본 조례」의 “사회적경제위원회”로 통폐합하여 효율적인 위원회 활동과 사회적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.

## 3. 주요내용

- 가. 용어 정의 명확성 확보(안 제2조)
- 나. 목적과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의 별도 운영에 따른 비효율성 해소  
(안 제3조)
- 다. 위원회 통폐합에 따른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 관련 규정 삭제  
(안 제4조 ~ 제9조)

## 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: 「지방자치법」 제116조의2

- 나. 입법예고: 2019. 5. 30. ~ 2019. 6. 19.(제출된 의견 없음)
- 다. 기획예산과의 행정규제심사 검토결과: 해당없음
- 라. 기획예산과의 위원회 사전심사 결과: 원안동의
- 마. 가정복지과의 자치법규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: 원안동의
- 바. 감사담당관의 자치법규 부패영향자율평가 결과: 원안동의
- 사.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·규칙심의회 심의·의결(2019.7.9.)

## 5. 검토의견

### ○ 본 조례안은

용어의 명확성을 확보하고 목적과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를 통합하여 효율적인 위원회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,

### ○ 검토의견으로는

- 안 제3조의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를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」에서 규정한 “사회적경제위원회”로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은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를 통합하여 체계적인 위원회 운영과 업무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,
- 기타 개정안은 용어의 명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보임.